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10일, 문금주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6.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7.16.) 상정,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9.12.)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금주의원)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받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

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가. 목적규정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명시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확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목적 규정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확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의 목표를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나. 비축사업 관리 규정 신설

개정안은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공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입비축사업이 농산물의 수급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개정안은 특정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또는 적정가격(이하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직접적 가격지지 정책의 도입을 통해 국가 차원의 농어가 소득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어가가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한편, 문금주의원안 및 주철현의원안은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점, 수산물은 일시에 다량으로 어획되고 쉽게 부패됨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높은 점,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외에 수산물도 (가칭)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향후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대상 품목에 수산물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 재정 소요 규모,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약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라.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개정안은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관련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비

롯하여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취지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